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1-71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12월 22일  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장

###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(‘21.1.12. 공포) 및 「지방공무원법」(‘21.12.9.시행)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~4조)
- 다.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#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회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6, FAX : 820-1474, E-mail : kyong69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**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(이하 “월액여비”라 한다)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,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.

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,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

**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**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고 한다)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.

**제4조(운임 및 숙박비 지급)**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
**제5조(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)**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

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
2.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

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,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.

**제6조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**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,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2. 제17조·제22조·제26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장관”은 각각 “의장”으로 본다.
3.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.
4.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제4조 및 별표”는 “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」제4조 및 별표 1”로 본다.
5.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.
6. 제24조제5항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제71조제2항”은 “「지방공무원법」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

7.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8. 제29조제1항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 , 같은 조 제2항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 및 같은 조 제4항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 는 없는 것으로 보며,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9. 공무원 여비 규정[별표 1]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“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” 은 “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” 으로, “공무원보수규정” 은 “지방공무원 보수규정” 으로, “공무원임용령” 은 “지방공무원 임용령” 으로,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 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 , “전문임기제공무원” 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 으로 한다.

**제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